

보 상 협 의 (공 시 송 달) 공 고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「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(봉정~방문) 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토지보상법'이라 함)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7. 18.

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

1. 사업의 개요

- 사 업 명 :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(봉정~방문) 건설공사
- 사 업 위 치 :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~ 봉정동
- 사업시행자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- 보상업무위탁(수행)기관 : 한국부동산원

2. 공고사유 :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

3. 공고기간 : 2022.07.18. ~ 2022.08.02.

4. 협의기간·협의장소 및 협의방법

- 협의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협의장소 :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공익보상부 (☎ 042-485-1152 / FAX 042-485-1194)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(대전무역회관 8층, 한국부동산원)
- 협의방법 :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,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. (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,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
5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

- 보상 협의 요청 → 협의성립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등기 → 보상금 지급
-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(또는 행정소송)
-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,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,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
6. 주의사항

-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(소유권 외 권리사항)을 먼저 해지(해제)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,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(보상금 지급 전)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(계약)에 응하시길 바랍니다.
-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며,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(일반용 1부, 부동산매도용 1부(매수인: 국토교통부 / 등록번호: 232 /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층(어진동))
-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)
- 협의대상 토지(건물)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(임야 또는 건축물)대장 각1부
-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(보상금 수령용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
-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(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)
-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(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)

8. 협의공고(공시송달) 대상

-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